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 9. 28 선고 2021가단168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1. 7. 13.

판 결 선 고 2021. 9. 28.

주 문

1. 피고와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9. 12. 13.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제1항 기재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20. 6. 19. 접수 제1522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하여 양수금 4,465,338원 및 그 중 2,026,000원에 대하여 2011.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C의 부친 D은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E, 자녀들인 F, G, C, 피고가 있다.

다. 위 공동상속인들은 2019. 12. 1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C에게 다른 재산은 없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나. 따라서 위와 같이 C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 지분(11분의 2)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로 추정된다.

다. C이 신용회복절차에서 원고의 채권을 상환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청구에 어떠한 장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와 C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이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욱

별지